

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코로나19 격리자등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

1. 사전투표: 5.28.(토) [확진자 · 격리자]

「공직선거법」 제6조의3, 「감염병예방법」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'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' 사전투표를 위한 외출이 일시적으로 허용됨을 알려드리니, 외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과 함께 외출허용 안내 문자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외출시간: 5.28.(토요일) 18시 20분부터 외출 가능. 18시 30분 이후 투표가능.

-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

(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투표가 가능하므로 18시 30분 이후 투표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- 시설입소자(군부대·시설 포함)의 경우 시설관리자 관리하에 외출시간 결정

※ 군부대 시설입소자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외출시간 결정 가능

○ 이동방법: 도보, 자차(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), 방역택시 등(대중교통 이용 금지)

○ 주의사항: 마스크(KF94 또는 동급 이상) 상시 착용,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,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

○ 투표: 사전투표소에 5.28일(토요일) 18시 30분부터 20시까지 도착, 일반선거인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 입장하여 투표, 투표안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

※ 일반선거인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종료 시까지 대기해야 하므로, 투표소가 혼잡하거나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투표소로 이동

○ 투표종료 후: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

※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,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(<https://nec.go.kr>)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코로나19 격리자등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

2. 선거일 투표: 6. 1.(수) [확진자 · 격리자]

「공직선거법」 제6조의3, 「감염병예방법」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'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' 사전투표를 위한 외출이 일시적으로 허용됨을 알려드리니, 외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**신분증과 함께 외출허용 안내 문자**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*사전투표(5.28.)에 이미 참여하신 분은 '해당없음'을 알려드립니다.**

○ **외출시간: 6.1일(수요일) 18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. 18시 30분 이후 투표 가능.**

- **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**

(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투표가 가능하므로 18시 30분 이후 투표소에 도착할수 있도록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○ **이동방법:** 도보, 자차(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), 방역택시 등(대중교통 이용 금지)

○ **주의사항:** 마스크(KF94 또는 동급 이상) 상시 착용,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,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

○ **투표:** 투표소에 **6.1.일(수요일)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도착, 일반선거인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 입장하여 투표**, 투표안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

※ 일반선거인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종료 시까지 대기해야 하므로, 투표소가 혼잡하거나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투표소로 이동

○ **투표종료 후:**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

※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,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(<https://nec.go.kr>)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